

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992. 12. 9.

충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24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1월 2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회 사하구의회(정기회)

제 2 차 충무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주 강 우)

가. 제안이유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공유재산 매각처분 : 1건 1필지 44㎡

○ 공유재산 사용허가 토지 1건 116.7㎡

건물 1건 116.7㎡

○ 재산의 내용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 재 지	지 목 (구 조)	전 체 면 적	신 청 면 적	재 산 가 격 (공 시 지 가)	비 고
매 각	괴정동 435-22	대	44	44	44,000	
사 용 허 가	당리동 317-16	대	4,733.8	116.7	1,780	토 지
	〃	철 근 콘 크 리 트	4,151.14	116.7	720	건 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① 괴정동 435-22번지 대지 44㎡는 점유자(주창호)가 '91. 4. 30 이전부터 13평 정도의 브록스레트 건물을 소유하여 현재 살고 있으며,
소규모 대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없고 신청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구재정 확보방안
- ② 당리동 317-16번지의 지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,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7호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여 사용허가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습

5. 토론요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(재석위원 12명 전원찬성)